

<교수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 안전지

동국대. / 관악여모. / 연세대총여. / 민우회. / 당산대총여. / 11대여위.

1.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 진행 상황 : 진행이 늦어짐에 따라

- 배너 → 인네네, 민우회, 여성신문, 여중, 생폭력 상담소.
- 전국 여교수 협의회에 대한 정보 → 협회감.연락. / 학내 생폭력 상담실 설치와 협의.
- pd수첩 모니터링

1. 인권위 진정서에 관하여

- 상담 결과 보고 : 진정한과 피해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 진정서 작성인: 누가 쓸 것인지?
- 그 외 알아본 정보들 → QMC 222.

① 7가지 사건 각각 진행 가능
② 피해자와 연락해야 함. 신상 파악.
③ 요구사건 진척이 양호 볼 수 있음.
④ 사안 공개 할임.

피해자 연각 추하기: 77년대 K교수 피해자. 80년대 피해자. → 201.

1. 입체 안쪽부터 → 이스트

- ① 연대회의 소개 및 현재 상황, 일정 및 소식, 서명 게시판, 자유게시판, 칼럼 게시판

● 추가하고 싶은 것(뜻): 교수성폭력, 해결 과정의 문제점, 사건 진행과 해결에 있어서의 어

① '신고' 운명 계획, 려움을 사건별로, 관련 법률 계시관, 신고계시관, ② 기사 스크랩, 계시관 → 편향

→ 주제? - 채울 글 분담: 새로이 써야 할 글은 거의 없을 듯하고, 써놓았던 글을 편집해야 함.

→ ~~Opinioni~~ ~~know~~ - 비용: (주소) 받는데 이, 삼만원. 1년 서버 사용하는데 20만원 정도. → 단위 불명.

→ 한가?

3. 앞으로 또 무엇을 할 것인지?

3. 앞으로 또 무엇을 할 것인지?

이규원씨 여학생들은 피해자들이 직접 움직여야 함. → 하기 먼저.

● 여성부 - 입양차별 실태조사 실시. } 조사결과 발표.

✓ 기획 소품: 대학생으로서 ~~여학생~~ 학생들을 만났는지 묻고 있다. → 좀 더 ~~인간~~ 인간을 두고 관계를 밝히기.

국가 상대론 : → 인건비 / 여성비 결과 후회.

- 연료비도 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 상당심.

କମଳା ଗାୟିତ୍ରୀ → ଗୁଣ କମଳା ଗାୟିତ୍ରୀ ଉପରେ

- ① ਚੰਦਰ. ਚੰਦਰ ਕੁਮਾਰ. 1900.
- ② ਤੇਜ ਕੁਮਾਰ. 1907.

<진정 접수 사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급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 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반드시 인권위원회의 진정서 양식에 써서 진정해야 하나요?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정하시고자 하는 내용과 진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와 피진정인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가 제공하는 진정서 양식을 이용하시면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빠지면 진정을 처리 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서라도 되도록 진정서 양식을 이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진정은 꼭 피해 당사자만 할 수 있나요?

→ 인권침해나 차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했거나 알고 있는 제3자(개인 및 단체)도 피해자를 대신해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진정할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제3자는 피해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어도 피해자를 위하여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이므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그 진정에 대하여 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조사할 수 없고 진정을 각하하게 됩니다.

진정인이 여러 명일 경우 어떻게 접수하나요?

→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진정을 하는 경우 진정인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인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고 진정한 경우라도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도 진정할 수 있나요?

→ 진정이 제기될 당시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그 진정은 각하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정, 고소, 고발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스스로 인지하여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형법 제123조),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경우(형법 제124조), 혹은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경우(형법 제125조)에는 예외적으로 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에 있거나 인지에 의해 수사를 개시한 후 종결하였는데 그 내용이 미흡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여전히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인권위원회도 진정에 대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인권침해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진정이나 고소, 고발 등에 의하여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하나요?

→ 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①조사대상이 된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②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③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④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경찰, 검찰 수사와 인권위원회의 조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 경찰, 검찰의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밝혀 혐의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조사의 직접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조사는 인권침해 내용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과 연결될 수도 있지만, 가해자 처벌보다는 당사자 사이의 화해나 권고, 조정, 법률 구조 등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회복, 피해구제를 더 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비강제적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신속하며 값싼” 구제절차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사’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하면 피해자가 인권위원회에 가서 진술을 해야 하나요?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피해자 본인이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인권위원회에 출석을 하여 사건을 자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을 하면 가해자를 처벌해 주나요?

→ 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를 직접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진정인과 인권침해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징계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전에 당한 인권침해도 구제될 수 있나요?

→ 인권침해, 차별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사건은 각하사유에 해당하지만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난 사건이라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남으로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본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제도 등에 따라 민사상 시효도 사안별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1년이 지난 사건이라고 무조건 각하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상담하신 후 진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접수 후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후에 그 진정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정 또는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진정을 접수한 후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이나 헌법소원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계속 조사권한을 갖게 됩니다.

접수번호	날짜 200 년 월 일 시 분		
진 정 서			
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국적	
④ 주소			
⑤ 전화	⑥ 팩스	⑦ 이메일	
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국적	
④ 주소			
⑤ 전화	⑥ 팩스	⑦ 이메일	
⑧ 진정인과의 관계	⑨ 기타		
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진정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③ 모르고 있다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			
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① 이름	② 소속		
② 연락처			
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② 법원·헌법재판소 등 권리구제기관의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기관 및 사건번호 ()			
③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누구 ()			
5.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6. 첨부서류: ☐ 있음 ☐ 없음
7.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하였습니까?
① 때
② 장소
③ 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 상담 후 종결로 처리하기 원합니다. ☐ 진정 접수를 원합니다.

진정인 _____ (서명 또는 날인)

수사기관 등에 진정·고소하면 조사 종결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음 ☐
긴급구제조치 ☐ 필요 ☐ 불필요
200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문제해결을 위한 서명운동

성폭력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악질적인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자로서, 학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높은 인격을 지녀야 할 대학교수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성폭력 사건은 교수라는 직위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권력으로 인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이런 유의 범죄가 일어나는 악습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가 최근 성추행 교수들에 대해 내린 처분이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위는 지난 2001년 학교 측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동국대 K교수의 징계수위를 정직 1개월로 경감시킨 것을 비롯하여, 얼마 전에는 학교 측으로부터 각각 파면과 해임처분을 받은 서강대 국문과 H교수, 같은 학교 영상대학원 K교수에 대해 각각 파면 취소와 정직 3개월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심위의 이러한 결정들은 스스로를 성폭력 가해 교수에게 면죄부를 씌어주는 기관으로 전락 시킨 것이며, 대학 내의 교수 성폭력 사건을 조장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에서 이런 재심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

존경하는 교수님께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제 곧 교정에서도 목련이 만발할 계절입니다.
항상 저희를 가르치시느라 애쓰시는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교수성폭력 반대운동'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교수성폭력'에 대해서는 신문 등에서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가 남성 교수님인 고려대학에서 여학생들은 쉽게 '제2의 성(性)', '타자화 된 성(性)'으로 취급되면서 강의시간이나 그 외 학습환경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광의의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이에 문제제기 하려고 합니다.

여학생들은 강의실 내의 '사소한' 발언에도 무력해지곤 합니다. 여성의 스커트 길이를 언급하면서 '짧을수록 좋다'하는 말, 교재를 안 가지고온 여학생에게 '몸팔아서라도 책을 가져와라'는 말처럼 여성의 외모를 대상화하고 성애화, 희화화하는 발언들을 저희는 어렵지 않게 듣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시간에 이해를 돕는다는 구실로 한 여학생을 피해자로 지목해서 강간상황을 예로드는 행위,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 결혼해야 한다'면서 여성의 능력과 잠재력을 제한시키는 행위등에서 여학생들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 하나에도 문제제기 할 수 없는 상황은 저희들을 더욱 무력하게 만들며, 다들 한번 웃고 지나가는 수업 분위기 속에서 여학생들은 더 이상 그곳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더 이상 방관과 체념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이후 운동에 교수님들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의실에서의 언어성폭력 뿐 아니라 교수-학생간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권력불균형으로 인해 사건해결이 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대학원에서 자신의 지도교수가 가해자일 때는 피해 여성이 학교를 그만두어야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까운 예를 하나 들자면 최근 서강대에서 잇따라 두 건의 교수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1년의 K교수 성폭력 사건과 2003년의 국문과 H교수 성폭력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K교수 사건의 경우, 학교 측은 지난한 해결 과정 끝에 교수의 2차 가해를 인정하여 가해교수에게 해임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국문과 H교수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교수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가해교수들은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교육부 산하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H교수의 징계가 파면에서 파면 취소로, K교수의 징계가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감면되었습니다. 본교의 사정만 보아도 꾸준히 사건의 신고가 들어오는 데에 비해 제대로 된 사건해결은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학내에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가 모두 교수로만 구성되어 사건해결에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해결이 성인지적 관점없이 진행되어 피해자가 완전한 보호와 보상은커녕 2차적인 피해와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조정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가할 것과 조정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또한 교수성폭력 사건을 위한 특별학칙제정운동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서강대의 사건과 맥락이 유사하지만 재심의가 기각되어 해임조치가 그대로 유지되었던 시립대 국문과 J교수의 사건은 언론의 관심과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의 관심이 사건해결과 대학 내 교수 성폭력의 궁극적인 근절에 필수적인 사항인 만큼 교수님들께서도 저희의 문제제기와 이후의 활동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편적 인간, 시민의 개념에 여성이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중립과 객관을 표방하던, 남성의 계보로만 이루어진 "학문"이 객관성과 보편성의 허울을 벗게 된 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시대에 저희는 항상 존재했지만 동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여성의 목소리를 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께 강의실에서의 성폭력과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에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나아가 여성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일인 동시에 일상의 정치학, 소수자 정치학에 대한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신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다시 한번, 저희의 활동에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2004년 3월 22일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일년 나기 프로젝트 드림

(여학생위원회, 총학생회, 문과대 학생회, 정경대 학생회,
철학반 여성학회 야간비행, 한국사 대동반, 정경대 여성학회 움틈)